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5
----------	-----

2023. 4. 28.(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3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2023년 4월 11일

라. 상정일자: 2023년 4월 20일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병천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기념사업(안 제5조)
- 지원(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가. 조례 제정 이유

- 인구절벽,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감소로 농산어촌은 물론 도시지역에서도 폐교가 증가하고 있음.
- 충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5년간 폐교 현황을 보면 충북 폐교 수는 19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34개), 경북(30개), 경남(24개), 강원(20)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상태임.
- 학교는 지역사회 정주 여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서 지속되고 있는 폐교와 지역 소멸 간의 악순환이 주목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고 있음.
-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개교 100주년 된 학교의 기념사업을 활성화하는 지원 정책은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존속이 갖는 교육적·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 제정은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명확히 함.
- 안 제2조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과 ‘학교’ 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제시함.
- 안 제3조에는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장려와 지원, 학교에서의 추진 노력을 각각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4조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기본 방향과 목표, 재원확보와 지원 방법 등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들에 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정책 확립과 예산 확보, 지원예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학교에서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학교의 존속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교육적·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을 증진시켜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을 함께하는 협력적 노력으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 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이번 조례 제정은 충청북도교육청이 개교 100주년 된 학교의 기념사업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공존의식을 높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실제적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활성화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가는 노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6조에 따라 지원예산의 규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충청북도교육청·학교 현장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지원금액 기준과 사업 범위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해당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이끌어 함께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첨부자료 1】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대상 학교 현황 파악〉

(2023. 4. 기준)

연번	지역	설립구분	학교급	학교명	개교 100주년 일자
1	음성	공립	초	감곡초등학교	2023년 6월 12일(월)
2	청주	사립	초	청주대성초등학교	2024년 3월 10일(일)
3	충주	공립	초	금가초등학교	2024년 4월 25일(목)
4	청주	공	고	청주고등학교	2024년 5월 5일(일)
5	청주	공립	중	청주중학교	2024년 5월 5일(일)
6	괴산증평	공립	초	도안초등학교	2025년 4월 20일(일)
7	청주	공립	초	오송초등학교	2025년 5월 7일(수)
8	충주	공립	초	양상초등학교	2027년 4월 18일(일)
9	청주	공립	초	낭성초등학교	2028년 4월 20일(목)
10	청주	공립	초	강내초등학교	2028년 5월 1일(월)
11	음성	공립	초	소이초등학교	2028년 5월 1일(월)
12	단양	공립	초	대강초등학교	2029년 4월 15일(일)
13	진천	공립	초	백곡초등학교	2029년 4월 16일(월)
14	청주	공립	초	현도초등학교	2029년 4월 17일(화)
15	음성	공립	초	대소초등학교	2029년 5월 1일(화)
16	진천	공립	초	만승초등학교	2030년 4월 19일(금)
17	제천	공립	초	금성초등학교	2030년 5월 1일(수)
18	영동	공립	초	양강초등학교	2031년 4월 15일(화)
19	충주	공립	초	동량초등학교	2031년 4월 27일(일)
20	괴산증평	공립	초	소수초등학교	2031년 7월 13일(일)
21	단양	공립	초	어상천초등학교	2032년 4월 15일(금)
22	괴산증평	공	초	증평초등학교	2032년 4월 19일(월)
23	옥천	공립	초	청성초등학교	2032년 4월 23일(금)
24	보은	공립	초	내북초등학교	2033년 4월 1일(금)
25	괴산증평	공립	초	감물초등학교	2033년 5월 15일(일)
26	청주	공	초	교동초등학교	2033년 6월 1일(수)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이하 “기념사업” 이라 한다)이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문화·예술·체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근거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원사업
3. 재원확보 및 지원방법
4. 그 밖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기념사업)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등 개교 100주년 기념 관련 자료집 발간
2. 개교 100주년 기념 홍보 영상 제작
3. 학교 역사관·전시실 건립
4. 기념식수, 기념비 등 기념 상징물 조성
5. 개교 100주년 기념 문화·예술·체육 행사 개최
6.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개교 100주년’ 학교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3. 관련조문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원사업
3. 재원확보 및 지원방법
4. 그 밖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2028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연도별 지원 학교 수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초	2	2		1	4	9
중	1					1
고	1					1
합계	4	2	0	1	4	11

나. 추계결과: 220,000천원

- 산출내역: 1교×20,000,000원×1회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초	40,000	40,000		20,000	80,000	180,000
중	20,000					20,000
고	20,000					20,000
합계	80,000	40,000	0	20,000	80,000	220,000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100%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80,000	40,000		20,000	80,000	220,000	
개교100주년 학교 지원	80,000	40,000		20,000	80,000	220,000	
재원 조달	80,000	40,000		20,000	80,000	220,000	
의존 재원	소 계	80,000	40,000		20,000	80,000	220,0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80,000	40,000		20,000	80,000	220,0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